|  |  |  |
| --- | --- | --- |
| **중화전국노조총회**  **《말단노조 경비수지 관리방법》**  **발부와 관련한 통지**  總工發[2009] 제47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노조총회, 중화전국철도노조총회. 중국민항노조전국위원회, 중국금융노조전국위원회, 중앙 직속기관 노조연합회, 중앙 국가기관 노조연합회:  말단노조 경비수지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고 말단노조의 재무관리수준을 한층 더 제고하기 위해 전국노조총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중국 노조정관》,《노조 회계제도》,《노조 예산관리 방법》및 기타 관련규정에 의거해 1998년에 반포한 《말단노조 경비사용 관리방법》을 개정하여 《말단노조 경비수지 관리방법》을 제정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집행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인쇄 발부하므로 열심히 관철 실시하기 바란다. 집행과정에 봉착한 관련 문제는 서면으로 전국노조총회 재무부에 보고하기 바란다.  중화전국노조총회  2009년 10월 28일  **말단노조 경비수지 관리방법**  말단노조 경비수지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고 보강함으로써 종업원을 위해 봉사하고 노조운동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말단노조의 역할을 남김없이 발휘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중국노조 정관》,《노조 회계제도》,《노조 예산관리 방법》및 기타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1. 노조 경비수지 관리원칙  (1) 준법원칙. 각종 경비수지는 국가의 법률 법규, 소재지 정부와 중화전국노조총회의 관련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재무회계제도를 진지하게 집행하며 재무기율을 준수해야 한다.  (2) 경비 독립원칙. 법에 따라 사단법인자격을 취득한 말단노조는 독자적으로 은행구좌를 개설하고 노조경비를 독자적으로 채산해야 한다.  (3) 예산 관리원칙. 노조의 경비수지는 모두 예산관리를 실시하고《노조 예산관리 방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4) 합법적 수납원칙. 말단노조는 법에 따라 노조경비를 수납하여 규정에 따라 공제하고 납부해야 한다.  (5) 종업원을 위한 봉사원칙. 노조경비 사용은 중점을 확실하게 정하여 종업원의 합법적 권리보장, 종업원을 위한 노조의 봉사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6) 검소, 절약 원칙. 노조의 경비는 면밀하게 계획하여 사용하고 경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더 많은 일을 하며 지출을 줄이고 경비의 사용효율을 높여야 한다.  (7) 민주주의 관리원칙. 종업원에 의지하여 경비를 잘 관리하고 사용하며 장부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민주주의 관리를 실시하여 노조원의 감독과 경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노조의 경비 수입범위  노조의 경비수입은 하기 각호를 포함한다.  (1) 회비 수입. 노조원이 규정에 따라 노조에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2) 조달경비 수입. 노조를 설립한 단위가 규정에 따라 말단노조에 조달하는 경비 또는 상급 노조가 세무부서에 위탁하여 대리 수취한 자금을 규정비율에 따라 말단노조에 조달하는 경비를 말한다.  (3) 상급의 보조수입. 말단노조에서 접수한 상급노조의 보조금을 말한다.  (4) 행정적 보조수입. 소속단위의 행정에서《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중국 노조 정관》및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노조에 조달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사업 수입. 노조에 소속하는 독립채산을 실시하는 기업, 사업단위가 상납한 수입과 비 독립채산을 실시하는 부속 사업단위의 제반 사업소득을 말한다.  (6) 투자 수익. 말단노조에서 대외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익, 예하면 국채나 기업의 사채를 구입하여 취득한 수익을 말한다.  (7) 기타 수입. 상기수입을 제외한 노조의 제반수입, 예하면 은행예금 이자, 증여수입 등을 말한다.  3. 노조의 경비 지출범위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과 사업단위, 기관 노조위원회 전담 임직원의 노임, 보너스, 보조금은 소속단위에서 지급한다. 사회보험과 기타 복지 등은 소속단위 종업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및 기타 관련문건 규정에 따르면, 각급 재정이나 기업, 사업단위, 기관의 행정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노조경비에서 지출해서는 아니 된다.  노조경비는 주로 종업원을 위한 봉사나 노조활동에 사용해야 한다. 말단노조는 소재지 성급 노조에서 정한 경비 배분비율에 따라 제때에 전액 상납하고 나머지 경비는 하기 항목에 지출해야 한다.  (1) 종업원 활동지출. 노조에서 노조원이나 기타 종업원을 위해 전개한 교육, 문화체육, 선전 등 활동의 경비지출을 말한다. 노조원이 납부한 회비는 전액 노조원 활동에 지출해야 한다.  종업원 교육. 여기에는 노조에서 진행하는 종업원 교육, 과외문화, 기술, 기능 교육에 필요한 교재, 수업에 필요한 소모품, 종업원 교육에 필요한 자료, 교원수당, 우수학원(자습 포함) 포상, 노조가 종업원을 위해 진행하는 정치, 과학기술, 업무, 재취업 등 각종 지식훈련 등을 포함한다.  문화체육 활동. 여기에는 노조에서 진행하는 종업원의 과외 문화 활동, 명절 연환모임, 문예창작, 미술, 서예, 촬영 등 각종 활동, 문화체육활동에 필요한 설비, 기자재, 용품의 구입비용과 보수비용, 문예공연, 체육경기 및 포상, 각종 활동에서 규정에 따라 지불하는 화식보조금, 야찬비 등 회비로 마련하는 노조원의 집체활동 등을 포함한다.  선전활동. 노조에서 진행하는 정치, 시사, 정책, 과학기술 강좌나 보고회 등의 선전활동, 노조가 마련하는 기술교류, 종업원 독서활동, 인터넷 선전 및 전시회, 벽보 등에 소모하는 용품, 노조에서 마련하는 명절 선전비용, 노조가 주최하는 도서관, 열람실에 필요한 도서구입, 노조의 정기간행물 및 자료비용 등을 포함한다.  기타 활동. 여기에는 상기 지출을 제외한, 노조에서 진행하는 기능경쟁 등 활동의 제반지출을 포함한다.  (2) 권익보장 지출. 직접 종업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의 지출을 말한다. 여기에는 근로관계나 근로분쟁 조율, 종업원의 근로권익 보호, 종업원을 위한 법률자문 제공, 법률서비스 제공, 종업원의 생활보조, 종업원의 위로금 등으로 발생한 노조의 지출 및 단체의 민주주의 관리 등에 참여하여 발생한 노조의 지출을 포함한다.  (3) 업무지출. 노조의 간부훈련, 자기건설 보강 및 업무활동에서 발생한 노조의 지출을 말한다. 여기에는 노조의 간부나 열성자의 학습과 훈련에 필요한 교재나 수업수당, 우수한 노조간부나 열성자 포상, 노동경쟁과 합리화건의, 기술혁신, 기술협조 활동, 노조 대표대회, 위원회 회의, 경제 심사회의 및 전문 업무회의, 노조의 외사활동, 조직건설, 전문 조사연구, 경제 심사회의 경비, 말단노조의 사무비용, 출장비용 등의 업무지출을 포함한다.  (4) 자본 지출. 건설공사, 설비나 도구 구입, 대규모 수선이나 정보인터넷 구축으로 발생한 노조의 지출을 말한다. 여기에는 가옥 등 건축물 건설, 사무용품 구입, 전용설비 구입, 대규모 수선, 정보인터넷 구축 등 노조의 자본 지출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의 규정에 따르면 각급 인민정부, 기업, 사업단위, 기관은 노조의 일상사무나 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장소 등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행정 측에서 자본지출을 부담할 힘이 없고 말단노조의 경비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노조에서 필요한 자본지출을 할 수 있다.  (5) 사업 지출. 노조에서 관리하는, 종업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 체육, 생활 등 독립채산를 실시하는 부속 사업단위의 보조금과 비 독자채산 사업단위의 제반 지출을 말한다.  (6) 기타 지출. 상기 노조지출을 제외한 제반지출을 말한다. 이를테면 회비로 지출하는, 회원에 대한 특별곤란 보조금, 노조에서 제공한 종업원의 집단복지 등의 지출을 말한다. 노조경비는 제때에 전액 조달되어야 한다. 노조경비를 차압, 유용해서는 아니되며 비 종업원에 대한 서비스나 노조가 아닌 여타지출, 사회의 분담이나 변상적 분담 비용, 단위나 개인에게 제공하는 단기대출, 경제담보, 저당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노조의 경비지출은 노조위원회의 집단적 지도와 주석책임 제도를 실시하며 중대한 지출은 집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4. 부 칙  (1) 각급 노조에서는 이 방법과 상급 노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 실정에 맞는 구체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2) 이 방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국 노조총회 재무부가 1998년 9월에 제정한《말단노조 경비 사용관리 방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붙임: 말단노조와 단위 행정측의 비용분할과 관련한 법률, 법규(적요) 설명  붙임:  **말단노조와 단위 행정측의 비용배분과 관련한 법률, 법규(적요) 설명**  이번 말단노조 경비수지 관리방법 재정 시에도《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중국 노조 정관》및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노조와 행정측의 비용배분과 관련한 규정들을 발췌하여 별첨으로 발급한다.  1. 노조의 건물, 설비의 비용  (1)《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제45조: 각급 인민정부와 기업, 사업단위, 기관은 반드시 노조의 사무, 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활동장소 등 물적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2)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건설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국가물자총국, 중화전국노조총회의《각급 노조의 건물, 설비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과 관련한 통지》(財事字[1979] 제 426호, 工發總字[1979] 제162호) : 산업회사의 노조와 말단노조 및 그 직원의 집단 문화, 복지 사업에 필요한 건물, 설비 및 그 수선, 급수, 전기, 난방 등의 비용은 모두 동급 행정 측이 해결한다.  2. 노조 전담 임직원의 비용  (3)《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제41조: 기업, 사업단위, 기관 노조위원회 전담 임직원의 노임, 보너스, 보조금은 소재단위에서 지급한다. 사회보험과 기타 복지대우 등은 본 단위 종업원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  (4) 전국 노조총회, 재정부 《〈노조법〉중 노조 경비문제와 관련한 구체규정》(工總財字[1992] 제19호): 노조 전담 임직원의 노임 지급문제. 전국민소유제나 집단소유제 기업, 사업단위, 기관에서 지급하는 노조위원회 전담 임직원의 노임, 보너스, 보조금, 근로보험 및 기타 복지대우는 소재단위 행정관리직원의 관련경비와 같은 루트로 지급한다.  (5) 재정부《기업 말단노조 직원의 정년 이직비와 정년 퇴직비, 퇴직생활비 지급문제와 관련한 회신》(財企字[1982] 제98호): 기업 말단노조 임직원의 정년 이직비, 정년 퇴직비와 퇴직 생활비 지급문제는 기업의 종업원과 동등해야 하며 기업의 행정 측이 책임지고 지급하며 영업 외의 루트로 지급한다.  3. 노조의 활동비용  (6) 전국 노조총회 판공청《노동보호활동의 경비문제와 관련한 통지》(工廳生字[1982] 제98호): 말단노조에서 노동보호활동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본 단위 행정 측 노동보호비용에서 지불해야 하며, 노조경비에서 지출해서는 아니된다.  (7) 국가 노동총국《기업의 노동보호 선전교육경비 지출문제와 관련한 서한》(勞護字[1980] 제18호): “기업에서 진행하는 노동보호 선전교육(노동보호 교육실 설비 포함) 경비는《안전 기술조치 계획종목 총 계정》에서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기업 노동보호조치 경비계정에서 지출해야 한다.”  제4호의 규정: “안전기술 노동보호 참고서적, 정기간행물, 선전 포스터, 플래카드, 슬라이드 및 영화 필름을 구입하거나 편집 인쇄한다. 안전기술 노동보호 전시회를 마련하고 진열실, 교육실 등을 설립한다. 안전 조작방법 교육 및 좌담회나 보고회 등을 마련한다. 안전생산의 규정제도와 조치를 구축하고 관철한다. 안전기술 노동보호와 관련한 연구, 실험 작업 및 그와 관련한 도구, 계기 등을 설치한다.”  (8) 전국노조총회 재무부《종업원 대표대회 비용부담과 관련한 통지》(財字[1981] 제29호): 종업원 대표대회는 전반 기업과 관련한 행사이므로 그 비용은 물론 기업에서 부담해야 한다.  4. 종업원 교육, 요양 활동의 비용  (9) 재정부, 전국노조총회 《일부 노동모범, 선진인물 단기 휴양활동경비 지출문제와 관련한 통지》(工發財字[1982] 제100호): 노동모범이나 선진인물의 휴양활동을 마련하는 경우 왕복여비와 식사보조금, 투숙비용은 노동모범, 선진인물 소속단위의 기업기금이나 이윤공제금에서 지불하고 활동비용, 공공잡비는 활동을 마련한 노조에서 부담해야 한다.  (10) 재정부《기업종업원 요양비용 지급과 관련한 회신》(財企字[1982] 제100호): 종업원이 인가를 받고 요양소에서 요양하는 왕복 교통비는, 산재인 경우 전액 기업에서 부담하고 산재 외의 질환인 경우에는 50km 이하인 경우 종업원 본인이 부담하고 50km 이상부분은 원칙상 기업에서 1/2를 부담한다. 요양기간 종업원의 식비는 기업에서 적당히 보조할 수 있으나 식비의 1/2를 초과하지 못하며 당사자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화식보조금을 적당히 올릴 수 있지만 식비의 2/3을 초과하지 못한다. |  | **中华全国总工会**  **关于印发《基层工会经费收支 管理办法》的通知**  总工发[2009]47号  各省、自治区、直辖市总工会，中华全国铁路总工会、中国民航工会全国委员会、中国金融工会全国委员会，中央直属机关工会联合会，中央国家机关工会联合会：  为规范基层工会经费收支管理，进一步提高基层工会财务管理水平，根据《中华人民共和国工会法》、《中国工会章程》、《工会会计制度》、《工会预算管理办法》和其他有关规定，全国总工会对1998年颁布的《基层工会经费使用管理办法》进行了修订，制定了新的《基层工会经费收支管理办法》，并将于2010年1月1日起执行。现印发给你们，请组织贯彻实施，并将执行中遇到的有关问题及时函告全总财务部。  中华全国总工会  2009年10月28日  **基层工会经费收支管理办法**    为规范和加强基层工会经费的收支管理，充分发挥基层工会为职工服务、为发展工运事业服务的作用，根据《中华人民共和国工会法》、《中国工会章程》、《工会会计制度》、《工会预算管理办法》和其他有关规定，制定本办法。  一、工会经费收支管理原则  1、遵纪守法原则。各项经费收支，必须严格执行国家法律法规、所在地方政府和中华全国总工会的有关规定，认真执行工会财务会计制度，遵守财务纪律。  2、经费独立原则。依法取得社会团体法人资格的基层工会，应单独开设银行账户，实行工会经费独立核算。  3、预算管理原则。工会经费收支应全部纳入预算管理，按照《工会预算管理办法》执行。  4、依法收缴原则。基层工会应依法收缴工会经费，并按规定留成上缴。  5、服务职工原则。工会经费使用要突出重点，保证维护职工的合法权益、开展职工服务和工会活动。  6、勤俭节约原则。工会经费使用要精打细算，少花钱多办事，节约开支，提高经费使用效益。  7、民主管理原则。要依靠职工管好、用好经费，定期公布账目，实行民主管理，接受会员监督和经费审查委员会审查。  二、工会经费收入范围  工会经费收入包括：  1、会费收入。指工会会员依照规定向工会组织缴纳的会费。  2、拨缴经费收入。指建立工会组织的单位依照规定向基层工会拨缴的经费，或上级工会委托税务代收后按规定比例转拔基层工会的经费。  3、上级补助收入。指基层工会收到上级工会补助的款项。  4、行政补助收入。指所在单位行政按照《中华人民共和国工会法》、《中国工会章程》和国家的有关规定给予工会的补助款项。  5、事业收入。指工会附属独立核算的企事业单位上缴的收入和非独立核算的附属事业单位的各项事业收入。  6、投资收益。指基层工会对外投资发生的损益，如购买国债或企业债券取得的收益。  7、其他收入。指基层工会除上述收入以外的各项收入，如银行存款利息、接受捐赠收入等。  三、工会经费支出范围  《中华人民共和国工会法》规定，企业、事业单位、机关工会委员会的专职工作人员的工资、奖励、补贴，由所在单位支付。社会保险和其他福利待遇等，享受本单位职工同等待遇。  根据《中华人民共和国工会法》和其他有关文件精神，应当由各级财政和企业、事业、机关等单位行政方面承担的费用，不得由工会经费开支。  　工会经费主要用于为职工服务和工会活动。基层工会要按照所在省级工会确定的经费分成比例，及时足额上解经费。留成经费支出包括：  1、职工活动支出。指工会为会员及其他职工开展教育、文体、宣传等活动发生的支出。基层工会应将会员缴纳的会费全部用于会员活动支出。  职工教育方面。用于工会开展职工教育、业余文化、技术、技能教育所需的教材、教学、消耗用品；职工教育所需资料、教师酬金；优秀学员(包括自学)奖励；工会为职工举办政治、科技、业务、再就业等各种知识培训等。  文体活动方面。用于工会开展职工业余文艺活动、节日联欢、文艺创作、美术、书法、摄影等各类活动；文体活动所需设备、器材、用品购置费与维修；文艺汇演、体育比赛及奖励；各类活动中按规定开支的伙食补助费、夜餐费等；用会费组织会员开展集体活动等。  宣传活动方面。用于工会开展政治、时事、政策、科技讲座、报告会等宣传活动；工会组织技术交流、职工读书活动、网络宣传以及举办展览、板报等所消耗的用品；工会组织的重大节日宣传费；工会举办的图书馆、阅览室所需图书、工会报刊以及资料费等。  其他活动方面。除上述支出以外，用于工会开展的技能竞赛等其他活动的各项支出。  2、维权支出。指工会直接用于维护职工权益的支出。包括工会协调劳动关系和调解劳动争议、开展职工劳动保护、向职工群众提供法律咨询、法律服务等、对困难职工帮扶、向职工送温暖等发生的支出及参与立法和本单位民主管理等其他维权支出。  3、业务支出。指工会培训工会干部、加强自身建设及开展业务工作发生的各项支出。包括开展工会干部和积极分子的学习和培训所需教材资料和讲课酬金等；评选表彰优秀工会干部和积极分子的奖励；组织劳动竞赛、合理化建议、技术革新和协作活动；召开工会代表大会、委员会、经审会以及工会专业工作会议；开展外事活动、工会组织建设、建家活动、大型专题调研；经审专用经费、基层工会办公、差旅等其他专项业务的支出。  4、资本性支出。指工会从事建设工程、设备工具购置、大型修缮和信息网络购建而发生的支出。包括房屋建筑物购建、办公设备购置、专用设备购置、交通工具购置、大型修缮、信息网络购建等资本性支出。  《中华人民共和国工会法》规定，各级人民政府和企业、事业单位、机关应当为工会办公和开展活动，提供必要的设施和活动场所等物质条件。在行政方面承担资本性支出的经费不足，并且基层工会有经费结余的情况下，工会经费可以用于必要的资本性支出。  5、事业支出。指对工会管理的为职工服务的文化、体育、教育、生活服务等独立核算的附属事业单位的补助和非独立核算的事业单位的各项支出。  6、其他支出。指工会以上支出项目以外的各项开支：如用会费对会员的特殊困难补助、由工会组织的职工集体福利等方面的支出。工会经费必须及时、足额收缴。不得截留、挪用，不得用于非职工服务和工会以外的开支；不得支付社会摊派或变相摊派的费用；不得为单位和个人提供资金拆借、经济担保和抵押。工会经费开支实行工会委员会集体领导下的主席负责制，重大开支集体研究决定。  四、附 则  1、各级工会可根据本办法和上级工会的规定，结合实际制定具体的实施办法。  2、本办法自2010年1月1日起执行，1998年9月全国总工会财务部制定的《基层工会经费使用管理办法》同时废止。  附件：基层工会与单位行政方面有关费用划分的法律、法规（摘录）说明  附件：  **基层工会与单位行政方面有关费用划分的法律、法规（摘录）说明：**  在这次修订基层工会经费使用管理办法时，根据《中华人民共和国工会法》、《中国工会章程》和国家的有关规定，继续摘录了工会与行政有关费用划分的相关规定，作为附件印发。  一、关于工会房屋、设备费用方面  1、《中华人民共和国工会法》第45条：各级人民政府和企业、事业单位、机关应当为工会办公和开展活动，提供必要的设施和活动场所等物质条件。  2、国家计划委员会、国家建设委员会、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国家物资总局、中华全国总工会《关于妥善解决各级工会房屋、设备问题的通知》([79]财事字第426号 工发总字[1979]162号)： 产业公司工会和基层工会及其所属职工集体文化、福利事业所需房屋设备及其维修和水电取暖等费用，均由同级行政解决。  二、关于工会专职人员费用方面  3、《中华人民共和国工会法》第41条：企业、事业单位、机关工会委员会的专职工作人员的工资、奖励、补贴，由所在单位支付。社会保险和其他福利待遇等，享受本单位职工同等待遇。  4、全国总工会、财政部《关于<工会法>中有关工会经费问题的具体规定》(工总财字[1992]19号)：工会脱产专职人员工资等列支问题。全民所有制和集体所有制企业、事业单位和机关支付工会委员会脱产专职人员的工资、奖励、补贴、劳动保险和其他福利待遇，与所在单位行政管理人员有关经费的列支渠道相同。  5、财政部《关于企业基层工会工作人员离、退休费和退职生活费开支问题的复函》([82]财企字第98号)：关于企业基层工会工作人员的离、退休费及退职生活费开支问题，应与企业职工一样，由企业行政方面负责支付，在营业外列支。  三、关于工会开展活动有关费用方面  6、全国总工会办公厅《关于解决劳动保护工作经费问题的通知》(工厅生字[1986]21号)：基层工会为搞好劳动保护工作所需费用，应在本单位的行政劳动保护经费中支付，不能在工会经费中开支。  7、国家劳动总局《关于企业劳动保护宣传教育经费开支问题的函》( [80]劳护字18号)：“凡企业开展劳动保护宣传教育(包括装备劳动保护教育室)所需经费，应按《安全技术措施计划的项目总名称表》第四项规定，在企业劳动保护措施经费中开支”。  第四项的规定为：“购置或编印安全技术劳动保护的参考书、刊物、宣传画、标语、幻灯及电影片等。举行安全技术劳动保护展览会、设立陈列室、教育室等。安全操作方法的教育训练及座谈会、报告会等。建立与贯彻有关安全生产规程制度的措施。安全技术劳动保护的研究与试验工作，及其所需的工具、仪器等。”  8、全国总工会财务部《关于职工代表大会的费用由谁担负的通知》(工财字[1981]29号)：职工代表大会的工作是整个企业的工作，其开支费用应由企业负担。  　四、关于职工教育、疗休养活动费用方面  9、财政部、全国总工会《关于组织少数劳动模范、先进工作者短期休养活动经费开支问题的通知》(工发财字[1982]100号)：组织劳模、先进生产(工作)者休养活动的往返路费、伙食补助费和床位费由劳模、先进生产(工作)者所在单位的企业基金或利润留成中列支；活动费、公杂费由组织活动的工会负担。  10、财政部《关于企业职工疗养费用开支的复函》([82]财企字100号)：职工经批准到疗养所疗养的往返路费，属于因工负伤的，全部由企业报销；属于疾病或非因工负伤的，五十公里以内的，由职工本人自理，五十公里以外的，原则上由企业补助二分之一。职工在疗养所疗养期间的伙食费，可由企业适当给予补助，最多不得超过伙食费的二分之一，如因身体衰弱或经济确实困难负担不起伙食费的，可酌量提高其补助费，但不得超过伙食费的三分之二。 |